

ISSUE BRIEF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 Global Commerce Institute

Vol. 4, 2024

■ 글로벌 수출통제 동향과 대응

신기훈 실장 | 01

1. 글로벌 수출통제 환경의 변화와 우리가 직면한 문제
2. 주요국의 첨단기술 관련 수출통제 정책
3. 우리의 대응 전략

■ 주요 통상일지

| 06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흔들리는 다자무역체제와 자유무역 기조 등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광장의 산하기관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을 면밀히 파악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한데 모아 이를 소통하고 공유하는 열린 토론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수출통제 동향과 대응

CONTACT



신기훈 실장

무역안보관리원

기업지원 실장

- 前 컴오브 커뮤니티 대표

- 現 법무처 R&D 평가위원

E: illuwa@kosti.or.kr

1. 글로벌 수출통제 환경의 변화와 우리가 직면한 문제

글로벌 경제에서 기술 패권 경쟁, 지정학적 긴장, 안보상의 이슈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수출통제 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수출통제의 범위와 강도 또한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글로벌 수출통제 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해지고, 국가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수출통제 준수(Compliance)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발맞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전통적으로 수출통제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한 최종사용자에게 제공되도록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 수출통제는 인권 보호, 경제적 이익 보호, 공급망 안전성 확보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비자 발급 제한, 주식 취득 제한, 인수합병 제한 등의 도구로써 더욱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형성하고 각국의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며 기업의 경영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술이전, 수출, 해외 투자 등에서 각국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수출통제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와 무역흐름의 재편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는 중국 내 반도체 제조사뿐만 전 세계 관련 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들은 동남아시아나 인도 등으로 이전하거나 자국 내 공급망을 재정비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존의 주요 무역 경로가 재편되고 비전통적 무역 파트너와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3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국가간 경제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새로운 제약 조건이 되어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비용과 리스크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EU는 러시아의 경제와 군사 산업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강력한 수출통제 정책을 시행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첨단기술, 정밀기계 등의 분야에서 러시아로의 수출을 제한하며 러시아의 기술 발전을 억제하고자 했으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like-minded countries)간 협력 강화를 통해 이러한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러시아와의 거래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해당 규제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한다.

2. 주요국의 첨단기술 관련 수출통제 정책

미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수출통제를 경제, 무역, 군사 안보 수단 등으로 도구화 하여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제정된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ECRA)」은 신형 · 기반기술을 통제범위에 포함시켰으며, 화웨이와 같은 중국의 주요 기술 기업을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 EL)에 추가하여 이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했다. 무역안보관리원에서는 향후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두 가지 방향을 예상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의 對중국 디커플링(De-coupling) 기조가 강화되면 엔티티 리스트에 대한 독자 통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둘째, 해리스 행정부는 첨단기술 분야를 제외한 일반 품목에 대한 정상적무역을 지속하는 디리스크(De-risking) 기조를

유지하며, 협력과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다자간 통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두 행정부 모두 다양한 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결합하는 방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¹⁾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확정된 현재, 우방국들의 수출통제 동참과는 별개로 독자 통제 확대와 해외직접생산품 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 및 De-minimis²⁾의 적극적인 활용이 예상되는 바, 우리 미국산 품목이나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은 자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적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핵심 자원으로 인식하고, 특히 반도체, AI, 5G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0년 이후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제조 기업인 중신 국제집성전로제조(SMIC)를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하며 미국 기술 및 장비를 활용한 반도체 수출을 제한했다. 이러한 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 기업들에게도 큰 파급 효과를 미쳤다. 특히 사항으로, 미국은 FDPR을 통해 외국 기업이라도 미국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표] 美 FDPR 제도 확대 경과

시기	개요	주요내용
1959	국가안보 FDPR	국가안보 사유로 통제되는 기술을 이용한 품목에 적용
2013.4	군사 FDPR 우주/위성 관련 FDPR	군용(600시리즈) 및 우주/위성(9X515) 관련 기술을 이용한 품목에 적용
2020.5	Entity List FDPR (화웨이)	미국 기술, SW, 장비로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Entity List 각주1 등재자(화웨이등)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경우 적용
2022.2	러시아, 벨라루스 FDPR 러시아 MEU FDPR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마련된 FDPR로 우리나라는 FDPR 면제국 지위를 획득(22.3)
2022.10	첨단 컴퓨팅 FDPR 슈퍼컴퓨터 FDPR Entity List FDPR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FDPR
2023.2	이란 FDPR	이란이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지원함에 따라 마련된 FDPR로 미국 기술, SW, 장비로 외국에서 생산된 품목(HS 6단위 기준 품목 포함)에 적용

출처: 무역안보관리원, 무역안보 Brief 2024 Vol.1

중국 역시 미국의 이러한 수출통제에 대응하여 자체 수출통제법을 강화하고 있다. 2020년 12월, 중국은 「수출통제법」을 시행하여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에 대한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역시 자국의 첨단 기술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24년 「희토류 관리 조례」의 시행을 통해 해외의 의존도가 높은 중국산 희토류와 같은 전략적 자원에 대한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글로벌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등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에게 리스크를 야기하고 있어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와 자원 확보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례」를 시행해 민·군 겸용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를 예고했다. 기존의 수출통제 품목을 체계화하고, 수출 사업자 등록제도를 취소하는 대신 수출허가제를 도입하여 최종사용자 및 최종 사용용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연합(EU)은 이중용도 품목 규정³⁾에 기반하여 수출통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세밀한 부분은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추가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4년 1월, 경제안보전략 패키지 중의 하나로 수출통제 백서⁴⁾를 발표하여 ①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분야의 EU 차원의 신속하고 조율된 조치 필요성 강조, ② 신흥·첨단기술/독자적 통제의 증가 등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EU의 각 회원국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개별적인 수출통제 제도의 운영에 있어 통일된 수준의 수출통제 전략을 도출하는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U는 기술 패권 경쟁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점차 강도 높은 수출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특히 반도체, 정밀기계, 첨단기술 부분에서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고자 하는 EU의 전략을 반영한다. 또한 EU는 전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산 에너지 자원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 카타르, 노르웨이 등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폭 늘리고, 2022년에 발표한 RePowerEU 계획을 통해 풍력,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등 중장기 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그간, 해외로의 수출 통제 품목에만 집중해왔던 수출통제를 수입을 포함하는 무역안보 전반으로 확대해서 대비해야 하는 이유이다.

3. 우리의 대응 전략

이러한 수출통제 강화는 한국 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필수 원자재와 핵심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 모두와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로 인해 양국 간 갈등이 우리 기업의 수출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제재 강화로 인해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이로 인해 중국 내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거나 반대로 특정 제품군의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 공급을 늘려야 하는 부담이 생기거나, 반도체 시장의 흐름이 불안정해 지면서 가격이 오르거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와 수출통제에 급격한 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 정부 역시 수출통제 주요국들의 수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정비하고,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내성확보(Geo-risk-proofing)를 강화해야 하는 시점임을 의미한다.

우리 기업들은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확보와 수출통제를 통한 위험관리라는 상충되는 상황 속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對한국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 미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등에 따라 주요 매스컴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도 “수출통제”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인식은 생겼으나, 여전히 실제 수출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기업 실무선에서는 규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대응 전략 수립 및 이행 역량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도 존재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의 접근성이나 인력·예산의 투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큼 정부 및 유관기관은 지방거점 교육, 다양한 온라인 홍보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확산을 통한 제도 미인지에 따른 무허가수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통제 제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수출제품의 통제여부(판정), 거래상대방의 적합성 확인 등에 따라 수출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⁵⁾을 통해 수출통제 관련 대부분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잘 구축되어 있다.

먼저, 수출허가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판정은 전문판정 기관에 의뢰하여 결과를 수령하는 “전문판정”과 기업 스스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자가판정”으로 구분된다. 전략물자의 해당여부는 단순히 품명이나 제품군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상세 기술 사양에 따라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밸브”를 수출한다고 할 때 ①호칭 치수, ②밀봉여부, ③재질 등에 따라 같은 밸브라도 해당·비해당으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전문판정의 경우 취급품목의 분야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이 상이하며, 업무일 기준 15일이 소요된다. 반면 자가판정의 경우 취급품목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통제 기준과의 일치성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판정할 수 있어 전문판정 대비 빠른 판정결과를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오판정 시 무허가수출로 연결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표] 「대외무역법」에 따른 판정·허가 소관부처·기관

소관품목	별표2 제1부~9부*	별표2 제10부	별표3
판정기관	무역안보관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국방기술품질원
허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 수입국정부(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 소관

특히, 기업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빠른 출하만을 목적으로 자가판정을 하는 경우, 오판정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판정의 신뢰성을 위해 수출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품의 기술사양을 확보한 후 판정을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신제품일 경우 전문판정을 신청하는 것이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안전하다 볼 수 있다.

이후, 우리 기업은 수출하려는 품목·기술의 허가 필요성이 확인되면 취급 품목에 따라 수출하기 이전에 소관부처로부터 수출허가를 득해야 하며, 전략물자 비해당 품목이라 할 지라도 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2나, ② 우려거래자, ③ 의심징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황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상황허가 대상품목은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기존 57개에서 2024년 10월 현재, 1,402개로 대폭 확대되었으므로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로 수출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⁶⁾

[표] 한국의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경과

시기	주요내용
2022. 2. 24	대러 제재 동참 선언
2022. 3. 4	미국의 FDPR 통제 면제국 포함
2022. 3. 26	제29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78개)
2023. 4. 24	제31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798개)
2024. 2. 24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1,159개)
2024. 9. 9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1,402개)

수출통제는 이제 일부 국가들만의 제재가 아닌 글로벌화 된 국제 규범으로써 자리잡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략 물자 통제 품목등을 결정하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⁷⁾ 중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WA)에서 2011년 총회에서 발표한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내부 통제프로그램 최적관행⁸⁾”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은 8개의 요소들을 포함하여 구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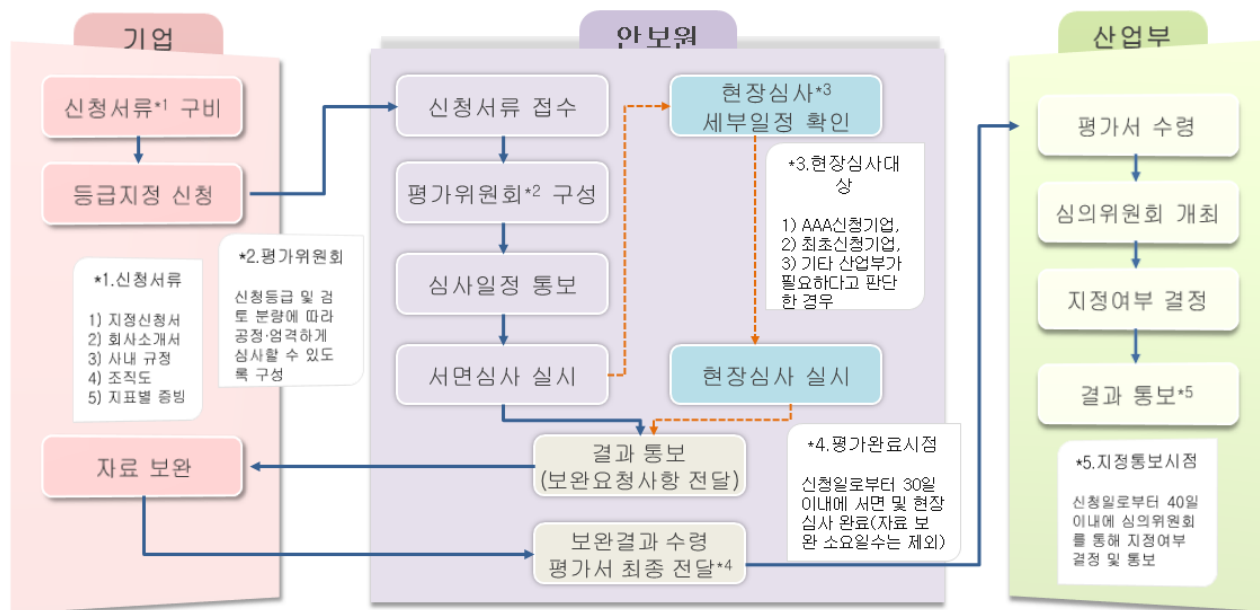
[표] WA의 ICP 구축 요소

① 규정	② 조직	③ 수출거래심사	④ 출하관리
⑤ 감사	⑥ 교육훈련	⑦ 자료보관	⑧ 보고·감사

자료: 바세나르체제(2011), 역자가 재구성
주: 우리나라는 상기 8개 요소 외 정보보안 관리를 포함하여 9개 요소를 운영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기업이 자율적으로 수출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하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Compliance Program; CP)라는 제도가 있어 이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무허가 수출 리스크 감소를 위한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면 특정국가 또는 본-지시간 거래의 수출허가 면제 등의 특례를 제공받을 수 있어 수출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 단,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등급별 특례, 지정 요건 등에 따른 서류 등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므로, 지정 희망일 기준 최소 3~4개월 이상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무역안보관리원에서는 “무역안보 컨설팅”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제도일반, 판정, 수출허가, 시스템이용, 제재, 미국제도, 자율준수체계구축 등에 대해 맞춤형 1:1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이용을 권장한다.⁹⁾

[그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신청 프로세스



출처: 무역안보관리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Basic 교육 자료 발췌

또한, 우리 기업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지역분산, 멀티 소싱, 투명성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유연한 계약 조건 설정, 재고 비축 및 전략적 비축재 운영, 공급망 내 자금 유동성 확보, 기술적 자립 및 현지생산 강화 등을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공급망이 불안한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소재부품장비수급대응지원센터, 코트라, 무역안보관리원 등의 지원기관을 통해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 정보 제공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복잡한 무역안보 환경 하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의 안전한 관리에서 무역안보 전반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2007년 설립된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통제 제도를 처음 접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무역안보관리원은 판정,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도입,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직접적인 도움 외에도 산업계 영향 분석, 정책수립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동향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기업의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의 수출통제는 소·다자간 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각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밀하고 다층적인 전략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사한 방향성과 역량을 가진 국가 및 기업 간의 거래 신뢰성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작동하며,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을 조정하고 새로운 형태의 무역안보 협력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우리 기업은 자율관리체계의 구축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수출통제를 기업 활동의 장애물이 아닌 기회를 확장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1) 무역안보관리원, 무역안보 Brief 2024 Vol.1, <https://www.kosti.or.kr/brd/board/216/L/menu/282?brdType=R&thisPage=1&bbsSn=5621&brdCodeValue=>
- 2) De-minimis: 수출통제 품목의 가액(가치) 기준으로 미국산 품목의 비중과 목적지 국가에 따라 제3국에서 수출하더라도 미국의 수출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
- 3) Regulation (EU) 2021/8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setting up a Union regime for the control of exports, brokering, technical assistance, transit and transfer of dual-use items
- 4) White paper on Export Controls(COM(2024) 25 final),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4DC0025>
- 5) <https://www.yestrade.go.kr>
- 6)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공지사항 (對러시아/벨라루스 관련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시행(2024. 9.9) 안내) 참고
- 7) WA, AG, NSG, MTCR
- 8) Best Practice Guidelines on Internal Compliance Programmes for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https://www.wassenaar.org/app/uploads/2019/consolidated/2-Internal-Compliance-Programmes.pdf>
- 9) 무역안보컨설팅 홈페이지, <https://homedoctor.yestrade.go.kr>(25년부터 help.yestrade.go.kr로 운영)

■ 주요 통상일지

날짜	내용
7.3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7.5	 EU집행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상계관세 부과 개시
7.8	 벨기에산 가금류 수입 중단 조치 전격 해제
7.8	 MERCOSUR 정상회의, 볼리비아 MERCOSUR 합류
7.9~11	  한국-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첫 협상
7.9~11	 NATO 정상회의
7.1	 조지아 EU 가입 절차 잠정 중단
7.1	 미국·일본산 광케이블 제조용 광섬유프리폼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7.11	 멕시코 통해 우회수출하는 중국 철강에 관세 부과
7.12	 미국 방산업체 추가 제재
7.15~18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7.18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발효
7.17~19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11차 공식 협상
7.22	 미국 통신기업에 부과된 제재 해제
7.25	 북한 미사일개발 지원 중국 기업 및 중국인 신규 제재
7.25	 '해외 경찰·안보 지원 활동'까지 수출통제 범위 확대
7.29	 WTO 전자상거래 복수국간 협정문 합의
7.29	 말레이시아, 브릭스(BRICS) 가입 공식 신청
7.31	 고성능 드론 수출 통제 임시조치 해제
7.31	 이란·후티 무기 조달 도운 중국·홍콩 기업 제재
8.1	  한-미 FTA 섬유 직물 원산지 기준 개정안 발효
8.1	 러시아, 휘발유 수출 금지

■ 주요 통상일지

날짜	내용
8.1	 AI규제법 발효
8.3	 베트남 무역지위 '비시장경제'로 유지 발표
8.6	 우크라이나 재건 금융지원 개시
8.9	 위구르 강제노동 중국 기업 추가 제재
8.1	 미국-캐나다-영국-EU, 벨라루스와 관련한 제재 추가
8.13	 신규 친환경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8.13	 한국-키르기스스탄, 실질협력 강화 합의의사록 서명
8.14	 러시아, 휘발유 수출 금지 연장
8.15~16	 제5차 미중 금융 워킹그룹 회의
8.16	 미국-영국-호주, 3국 사이의 무기 기술 수출 통제 완화
8.16	 희소금속 안티모니 및 일부 초경재료 수출 통제
8.2	 미·EU·싱가포르산 부틸고무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8.2	 제조업 외국인 투자 제한 전면 철폐
8.2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확정관세 결정 초안 발표
8.23	 한·파라과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8.23	 러시아에 반도체 등 수출한 중국 등 위장 기업 제재
8.26-30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정상회의
8.27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에 25% 관세 부과 발표
9.2	 한국-페루, 핵심 광물 협력 확대 MOU 체결
9.2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결의안 시행
9.4~6	 '중·아프리카 협력 포럼' 정상회의
9.5	 '아동노동 제품' 목록에 한국, 벨라루스, 네덜란드, 모리셔스 추가

■ 주요 통상일지

날짜	내용
9.5	 미국, 핵심 신흥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 발표
9.7	 통상·무역 분야 차관급 워킹그룹 회의
9.9	 네덜란드, ASML의 첨단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제한 확대
9.1	 EU, 영국, 미국 외 7개국, AI 조약 체결
9.1	 '미사일 거래'관련 러·이란 신규 제재
9.12	 인도, 중국·베트남산 강관에 최대 30% 관세 부과
9.14	 캐나다·일본·인도산 할로겐화 부틸고무 반덤핑 조사 개시
9.19-20	 미중 경제실무회의 개최
9.23	 WTO에 중국의 EU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에 대한 분쟁제기 절차 착수
9.24	 일본제철, US스틸 인수심의 재신청
9.24	 상무부, 폴라반도체에 보조금 지급 확정(반도체법 첫 사례)
9.25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관련 '자발적 최저가' 제안 논의
9.26	 대만, 모든 일본산 식품 수입 허용
9.26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조사 개시
9.27	 중국산 전기차 100%, 태양전지에 50% 관세 부과
9.27	 캐나다의 전기차, 철강 관세 부과에 대한 차별 여부 조사 착수
9.27	 민주당 하원의원,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법안 발의
9.29	 백미 수출 재개
10.1	 동남아 4개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 최대 300%에 달하는 관세율 적용 발표
10.2	 ECHA 위험평가위원회(RAC), 활석에 대하여 발암물질로 분류
10.8	 인도네시아, 한국 등 3개국 평판압연제춤에 반덤핑 관세 부과
10.8	 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 시행

■ 주요 통상일지

날짜	내용
10.10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발표 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첫 조사
10.11	 호주산 랍스터에 대한 수입 제재 조치 해제
10.11	 IPEF 청정경제협정 발효
10.12	 IPEF 공정경제협정 발효
10.15	 미국과 일본 반도체 제조용 원료 반덤핑관세 5년 연장
10.16	 EU-걸프협력회의(GCC) 첫 정상회의 개최
10.16	 세계최대 드론업체 중국 DJI 일부 제품의 수입 중단
10.18	 유럽중앙은행, 2024년 세 번째 금리 인하 결정
10.2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대폭 강화 결정
10.21	 산업안보국, 동맹국 대상 우주산업 수출통제 규정 일부 완화
10.22	 러시아,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개막
10.24	 G20 무역장관회의 개최
10.3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시작
10.3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산업피해 최종 부정 판정
10.21~11.1	 콜롬비아, 16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6)
11.5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혐의로 조사 착수
11.5	 WTO에 전기차 관세 관련 EU 추가 제소
11.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11.6	 한국산 예폭시 수지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발표
11.6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 발표
11.14	 한국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
11.14	 EU의회,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시행 개정안 통과

■ 주요 통상일지

날짜	내용
11.15	 페루, APEC 정상회의 개막
11.15	 EU이사회 도시 폐수처리 지침 최종안 채택
11.18	 G20 정상회의 개막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Issue Brief 발간 목록

■ 2024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세계 3위로 떠오르는 인도경제: 사업기회와 도전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4.7
2	글로벌 인공지능(AI) 규제 동향과 시사점 - EU,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4.4
3	[Special Issue Brief] 2024 미국 대선: 주요 관전 포인트 대선 · 의회선거 시나리오와 통상 리스크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4.3
4	2024년 7대 글로벌 경제통상 이슈와 대응방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4.1

■ 2023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국제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 경쟁법 입법 동향: 미국과 EU의 사례 분석	정환 변호사(광장) 김영서 변호사(광장) 정문경 연구원(광장)	2023.10
2	EU의 新통상법 추진 동향과 우리의 대응	허난이 연구위원 박수령 연구원 문희은 연구원(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3.5
3	[Special Issue Brief] The Reorganization of Global Supply Chains in a Changing World	Sébastien Miroudot 박사(OECD)	2023.2
4	2023년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 2022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해외투자심사제도의 도입 추진 및 평가와 전망: 미국의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고준성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2022.9
2	[Special Issue Brief]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허난이 연구위원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2.8

3	[Special Issue Brief]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해설 및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박정민 변호사(광장)	2022.7
4	대(對) 러시아 제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 전략	이재원 선임전문관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2.5
5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2.2
6	EU 탄소국경조정세 (CBAM)의 시사점과 대응 방안	이상준 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1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The U.S.-China Strategic Confrontation on Trade: How Supply Chains Became Strategic National Resources under Trump, and How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and Expand That Policy	J.Scott Maberry (Sheppard, Mullin, Richter & Hampton LLP)	2021.7
2	CPTPP와 국영기업	정기창 외국변호사(광장)	
3	[Special Issue Brief] '디지털무역(Digital Trade)'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의 형성: 양자 '디지털무역협정'의 등장과 최근 논의 동향	곽동철 교수(경북대학교)	2021.5
4	미국과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동향과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대응	설동근 변호사(광장) 이준용 외국변호사(광장) 김상민 변호사(광장)	2021.4
5	중국 수출통제법을 통해 본 중국 통상환경 동향	김윤희 박사(KOTRA)	
6	[Special Issue Brief] 브렉시트 이후 영국 및 EU의 대외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박성훈 교수(고려대학교)	2021.2
7	2021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방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1.1

■ 2020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Special Issue Brief] RCEP 서명의 의미와 시사점	강문성 교수(고려대학교)	2020.12

2	[Special Issue Brief] 바이든 당선자의 통상정책에 대한 워싱턴과 브뤼셀의 시각 • Trade Policy of the Biden Administration of the US and the Implications to the Korea-US Trade Relations • Biding Time for Biden's New Trade Agenda	Joel D. Kaufman 변호사 (Steptoe & Johnson LLP) 이호석 박사(ECIPE)	2020.12
3	The Reshuffle of GVCs in the Era of US-China Decoupling and COVID-19	Sébastien Miroudot 박사(OECD)	2020.10
4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Global Value Chain 현황과 변화 전망	이항구 연구위원(한국자동차연구원)	
5	USMCA 발효의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점	강준하 교수(홍익대학교)	2020.7
6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중국의 외국인 투자제도	안유화 원장(중국증권행정연구원)	
7	[Special Issue Brief] The USMCA: An Introduction to the Rules of Origin for Passenger Vehicles and Light Trucks	R.O. Cunningham 변호사 G.S. McCue 변호사 Z. Simmons 변호사 (Steptoe & Johnson LLP)	
8	Brexit: The imminent crisis in the EU-UK trade negotiations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이호석 박사(ECIPE)	2020.3
9	우리나라 기업지원프로그램의 보조금 특정성 사례분석 및 시사점	조영재 변호사(광장)	
10	2020년 글로벌 통상여건의 불확실성과 대응방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0.1
11	[Special Issue Brief] 미-중 경제 · 무역협정: 주요 내용 및 분석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 2019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Special Issue Brief]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에 맞선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디지털세 관련 국제 규범 논의 동향 및 시사점	허난이 연구위원(광장) 박정준 연구원(광장)	2019.8
2	[Special Issue Brief]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우리기업의 대응방향	이재원 연구원(광장)	2019.7
3	다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미중(美中) 무역분쟁, 그 다음 수순은?	이재민 교수(서울대학교)	
4	미중(美中) 무역협상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장윤종 원장(포스코경영연구원)	

5	Trade Policy Implications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Sébastien Miroudot 박사(OECD)	2019.7
6	미국 보호무역조치의 새로운 무기(new weapon), 통화보조금: WTO 보조금 협정 합치성 분석을 중심으로	주현수 변호사(광장)	
7	BREXIT의 배경, 현황 및 전망	박성훈 교수(고려대학교)	2019.5
8	BREXIT에 대비한 "무역연속성협정": 영국-칠레 간 협정 분석을 중심으로	허난이 연구위원(광장)	
9	WTO 개혁 논의: 상소기구 개혁을 중심으로	김혜수 변호사(광장)	
10	CPTPP on the Go: Next Step is Enlargement	Shujiro Urata 교수(와세다대학교)	2019.1
11	The USMCA: What it Tells us about U.S. Trade Policy and What it Means for Korea	Richard O. Cunningham 변호사 (Steptoe & Johnson LLP)	
12	미국의 독자적 경제 제재와 기업의 딜레마	이현송 변호사(광장)	

■ 2018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Targeting China	Jeffrey J. Schott 박사(PIIE) Lucy Lu 애널리스트(PIIE)	2018.10
2	Moving from One Landmark to the Next: What the New EU-Japan EPA Means for Korea	이호석 박사(ECIPE)	
3	국제통상과 안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중심으로	정기창 변호사(광장)	
4	최악의 세계무역환경과 우리의 대응	박태호 원장(광장)	2018.7
5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규제 현황과 평가	최석영 고문(광장)	
6	EU의 무역구제규범의 현대화: 최근 규범 개정에 대한 분석 및 WTO 합치성 검토	허난이 연구위원(광장)	

- 법무법인(유) 광장 [홈페이지](#)에서 모든 이슈브리프 발간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